

#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이 대 원 위원입니다.

정회시 협의 조정된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
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.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15조제4항제1호중 “도 실 · 국장 ”을 “도 실 · 본부 ·  
국장으로 한다.

○ 안 제17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

○ 안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 
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○ 안 제19조중 “활동비(여비 등)”을 “수당 및 여비”로 한다.

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